
한 눈에 보는 공직유관단체 제도 안내서

2024. 9.



인사혁신처

|| 목 차 ||

I. 공직유관단체란?	1
II. 공직유관단체가 지정·고시되는 절차는?	2
III.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그 효과는?	3
1. 재산등록 / 4	
2. 재산공개 / 8	
3.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 10	
4. 선물신고 / 15	
5. 취업제한 / 17	
6. 행위제한 / 22	
7. (참고) 타 법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 / 24	

한 눈에 보는 공직유관단체 제도 안내서

이 매뉴얼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으로 인해 임직원들에게 부여되는 의무를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I 공직유관단체란?

■ 공직유관단체란?

-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및 공단을 비롯한 공공성이 큰 기관이나 단체로서, 지정되는 경우 재산등록 의무 등 일정 의무를 부과 받는 기관·단체를 말합니다.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 왜 지정하는 것인가요?

- 공공성이 높은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게 재산등록, 재산공개 의무 등을 부여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언제부터 지정되었나요?

-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1983년부터 현재 까지 계속하여 공직유관단체를 지정·운영해 왔습니다.

< 공직유관단체 지정 현황 >

'20(상)	'20(하)	'21(상)	'21(하)	'22(상)	'22(하)	'23(상)	'23(하)	'24(상)	'24(하)
1,198개	1,227개	1,282개	1,334개	1,352개	1,376개	1,391개	1,408개	1,412개	1,429개

■ 어떤 단체가 지정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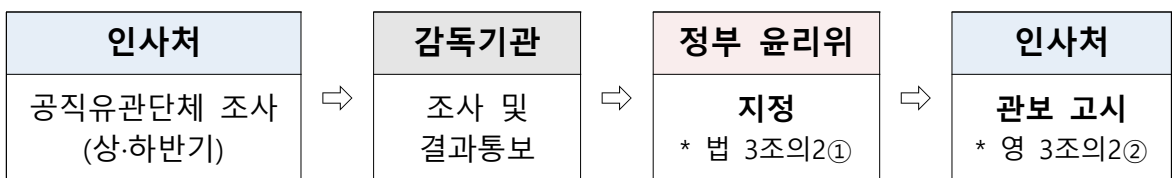
- 정부 재정을 일정액 이상 지원받는 기관·단체 등 다음과 같은 기관·단체가 해당됩니다.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1. 한국은행	
2. 공기업	* 예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단체	* 예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립중앙의료원 등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 예 :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설공단, 인천교통공사, 부산관광공사 등
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 포함) ※ 재정지원 규모는 최근 3개년 평균 지원액으로 함	* 예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적십자사 등
6.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단체	* 예 : 한국증권금융(주),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7.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	* 예 :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주) 등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위의 5~7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 2024년 하반기 기준 1,429개 기관으로, 공직윤리시스템(PETI, <https://www.peti.go.kr> > '공직유관단체' 메뉴 클릭)에서 해당 되는 기관·단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I 공직유관단체가 지정·고시되는 절차는?

■ 인사혁신처 및 각 감독기관의 조사 절차를 거쳐,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지정하며, 인사혁신처장이 매 반기 말 관보에 고시합니다.



Ⅲ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그 효과는?

-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소속 임직원은 재산등록·공개, 취업·행위제한 등 여러 가지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 비록, 다소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절차일 수는 있으나, 깨끗한 공직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무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 눈에 보는 공직윤리 >

재직공직자의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재산등록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일부 직원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재산을 등록해야 함
재산공개	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 장 등에 대해서는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함
주식백지신탁	재산공개 대상자 등은 보유주식이 3천만원 초과시 이를 매각, 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등을 하여야 함
선물신고	직무 관련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원화 10만원, 외화 100달러 이상 선물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퇴직공직자의 부정청탁·알선 신고	퇴직공직자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
취업청탁 제한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동안 처리한 일정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본인의 취업 청탁행위 불가
퇴직공직자의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재산등록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재산공개	재산공개 대상자에서 퇴직한 사람은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함
취업제한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됨 ※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 가능
취업사실 신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 시 전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해야 함
업무취급 제한	본인이 재직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를 퇴직 후 취급 불가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기관 대상 처리한 일정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 불가
업무내역서 제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심사 대상기관에서의 업무 내역서를 관할 윤리위에 제출해야 함
부정청탁·알선행위 금지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을 해서는 안 됨

1

재산등록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주기적으로 등록합니다.

1. 재산등록 대상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영 제3조)

■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임원이란 이사·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 이상의 상근임원을 의미합니다.

■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 그 외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농협·수협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가 포함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 ※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은 수석급 이상 직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국가철도공단의 2급 이상 직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전 직원
-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과 그 상급 감독자 (2021.10.2.~)
- ※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전담기관 직원 (2024.6.27.~)

- 다만,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은 제외

2. 등록대상 재산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 아래에 해당하는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에 대하여 등록하되,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소유 재산은 모두 등록합니다.

※ 단,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고지거부 가능합니다.

【 등록대상 재산 】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 지분
- 주식매수선택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자주 실수하는 사례

- ▶ 본인 및 친족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을 경우 전세(임차)보증금을 누락하거나 채권항목에 “사인간 채권”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 전세(임차)권은 “건물항목”에 “전세(임차)권”으로 신고해야 함
- ▶ 본인 및 친족소유로 신고한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음에도 신고 누락
⇒ 소유건물 임대로 인한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은 “채무항목”에 “건물임대채무”로 신고해야 함
- ▶ 금융재산 및 채무신고 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모두 등록대상이나, 계좌별 1천만원 이상만 신고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신고 누락
⇒ 소유자(개인)별 총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함

3. 재산등록 시 재산형성과정 기재 (법 제4조제5항)

- 재산공개 대상자^{9쪽}는 ①사인간 채권 및 채무, ②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③주식매수선택권, ④가상자산에 대해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등록 대상자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4. 재산의 등록 시기 (법 제5조, 제6조) < 참고 1 >

- 등록의무가 발생한 날(승진, 전보, 퇴직 등)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 예 : 2024. 3. 10.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2024. 5. 31.까지 등록
- 정기변동신고는 등록의무자 전원이 전년도 재산변동사항(전년도 12. 31. 기준) 매년 2월 말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의무자의 인사발령이 있는 경우, 즉시 감독기관에 통보하여 법령에 정해진 기한내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재산의 등록 기관 (법 제5조)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속한 기관·단체를 감독하는 부·처·청에 등록하며, 시·도, 시·군·구 또는 시·도 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경우, 해당 시·도, 시·군·구 또는 시·도 교육청에 등록합니다.
※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중 재산공개대상자(법 제10조)는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합니다.

6. 재산등록 방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온라인 제출). ※ 모바일 신고 불가
※ [재산신고] > [신고서 작성] 또는 신고서 작성 버튼 클릭으로 작성 시작

재산등록 시 주의사항

- ▶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법 제24조),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중대 과실로 누락하는 경우 등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법 제30조), 성실한 신고의무를 다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 1 : 재산등록 종류 및 시기 자세히 알아보기 >

종류	변 동 사유	등 록 대 상	등 록 시 기	고지거부 신청기간	등 록 내 용
최초 신고	신 규	- 최초 재산등록 의무자가 된 경우 (법 제5조제1항) * 예외)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는 재산등록 제외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개월 이내	등록기준 일 현재의 재산
	승 진	- 재산등록 후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법 제10조제2항) * 예외) 등록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는 공개자 최초 등록 제외			
변동 신고	정 기	- 등록의무자 전원 (법 제6조제1항) * 예외) ① 유예 허가 받은 경우 ⇨ 유예사유 해소 시 신고 ② 10~12월 중 최초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 최초신고 ③ 10~12월 중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 최초신고 ④ 10~12월 중 재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 재등록신고 ⑤ 1~2월 중 퇴직한 경우 ⇨ 퇴직신고 ⑥ 1~2월 중 의무면제된 경우 ⇨ 의무면제신고	다음 해 2월말 까지	1.31일까지 * 재심사 : 2월말까지	매년1.1 (또는 재산 등록 후) ~12.31 까지 재산변동 사항
	의 무 면 제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아닌 공직자가 된 경우 포함) 전보 등으로 등록의무를 면제 받았을 때 (법 제11조제1항) * 예외) 의무면제 후 면제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 이내 다시 등록 의무자가 된 경우 ⇨ 신고사항 없음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개월 이내	최종재산 신고이후 변동사항
	유 예 복 귀	- 외국기관으로 파견, 휴직 등으로 변동신고 유예 후 복귀자 (법 제6조의3)			
	재등록	- 전보·강임·강등 또는 퇴직 등으로 의무면제 후 3년 이내(퇴직한 경우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법 제5조제1항 단서) * 예외)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는 재산등록 제외			
	퇴 직	- 퇴직한 경우 (법 제6조제2항) - 등록대상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경우 (법 제6조제4항) * 예외) ①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 신고사항 없음 ② 등록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 소속기관에서 등록제외 처리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개월 이내	

2 재산공개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재산등록의무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재산을 공개합니다.

1. 재산공개 대상자 (법 제10조, 영 제24조)

☞ 해당 임원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인 경우에만 재산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등

※ 그 외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가 포함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 또는 재출자·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의 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대통령이 임면하는 기관·단체의 장

더 알아보기

- ▶ 재산공개 대상인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또한 인사혁신처에서 반기별로 고시를 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 기준 521개의 기관이 해당됩니다.
- ▶ 공직윤리시스템(PETI, <https://www.peti.go.kr>) > '공직유관단체' 메뉴 클릭)에서 해당되는 기관·단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공개시기 및 내용

-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등록(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공보)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며,

* 공직윤리시스템(PETI) 재산공개 통합 검색(<https://www.peti.go.kr>)

※ 최초신고사항 및 변동신고사항(정기 변동신고, 의무면제자·재공개자·퇴직자 변동신고 등) 공개로 구분

-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공개합니다.

3. 공개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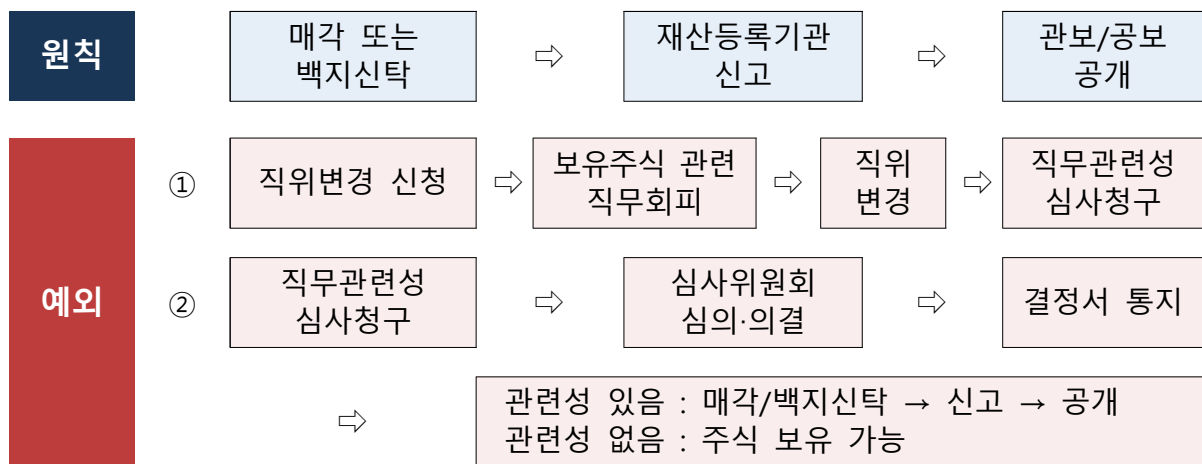
- 행정부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등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자치단체 관할 공직유관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합니다.

3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주식을 원칙적으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여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절차 흐름도



2. 대상자 (법 제14조의4)

■ 재산공개대상자^{8쪽}와 동일합니다.

3. 대상주식 및 예외

■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 배우자(사실혼의 배우자 포함), 본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와 재산등록 신고지거부자는 제외됩니다.

■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고 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유 가능합니다.

4. 매각 등의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기준일)

-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날(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을 포함합니다)
- 재산공개대상자가 된 날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휴직 등,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가 소멸된 날
-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법 제14조의6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영 제27조의9)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법 제14조의6제2항)
- 대상자의 직무가 변경된 날

5. (원칙)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절차

-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는 경우 위의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부 또는 3천만원 이하로 백지신탁을 하고, 매각·백지신탁신고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 서식)와 매각·백지신탁공개목록(별지 제14호의4 서식)을 작성하여 재산등록기관에 제출합니다.
 - ※ 신고방식 : 공직윤리시스템에 로그인,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서 기재사항을 입력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신고
 - ※ 신고한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은 관보 또는 공보에 1개월 이내에 공개됩니다.

더 알아보기

- ▶ 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정기재산변동신고 및 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4조의4제3항).
- ▶ 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시까지 그 신탁재산은 정기재산 변동신고 및 주식거래내역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 제14조의4제4항).

주의사항

- ▶ 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본인 및 이해관계자 어느 누구도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새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합니다(법 제14조의6제1항).
- ▶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법 제14조의6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시행령(영 제27조의9)이 정하는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수탁기관은 최초 백지신탁된 주식을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처분하고 운영합니다.

※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신탁자는 수탁기관에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하여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관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신탁자는 신탁재산의 가액이 3천만원 이하로 하락하여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통지받은 경우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법 제14조의10제2항).

6. [예외] 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 보유주식이 담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되어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한다면,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 또한, 보유주식이 담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직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직위변경 완료 후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2개월 이내).

직무관련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주식 및 주식발행기업 관련 정보에 직접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법 제14조의5제8항), 구체적으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지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영 제27조의8제1항).

1.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한 직무
2. 각종 수사·조사·감사 및 검사에 관한 직무
3. 인사·허가·면허 및 특허 등에 관한 직무
4. 조세의 조사·부과 및 징수에 관한 직무
5. 법령상 지도·감독에 관한 직무
6.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한 직무
7.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직무
8. 그밖에 위원회가 직무관련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

<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 >

관련성 '없음' 결정 받은 주식	그대로 보유하거나 추가로 매입 또는 매각 가능 ※ 다만, 승진이나 전보 등으로 직무 변경 시 변경된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해야 함
관련성 '있음' 결정 받은 주식	해당주식들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고 그 사실을 재산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함 ※ 해당주식들의 총 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보유 가능

7. 직무 회피

-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가 금지됩니다.

< 직무관여 금지 기간 >

①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처음 신탁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②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
⇨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③ 직위 변경을 신청한 경우
⇨ 직위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④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매각, 백지신탁, 심사 청구, 직위변경 신청한 경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매각) 매각한 날까지 ⇨ (백지신탁 계약 체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날까지 ⇨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 받은 날까지 ⇨ (직위변경 신청)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 회피 대상 직무는 해당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영 27조의11).

■ 회피대상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회피 기간 중 보유주식 관련 업종 또는 업체 관련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 불참해야 합니다.

* 관련 회의 불참, 결재 및 보고라인에서의 배제, 업무지시 불가 등

※ 다만,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직무 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직무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 주식백지신탁 신고 및 직무관여 위반 시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①경고 및 시정조치, ②과태료 부과(2천만원 이하), ③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합당한 사유 없이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경우와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대해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관여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법 제15조)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가족이 해당됩니다.

2. 선물신고 및 이관 절차

① 신고서 제출(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감사담당부서)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시장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감사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시 제재 : 해임, 징계의결 요구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22조, 제30조)

② 신고서 접수(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감사담당부서)

-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즉시 선물신고를 접수 하며, 선물의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직유관단체 에서 선물평가단 회의*를 거쳐 접수여부를 결정합니다.

※ 예시 : 단장(감사담당 부서의 장), 부단장, 간사를 포함하여 7인 내외 구성

③ 선물이관 절차(공직유관단체의 장 → 등록기관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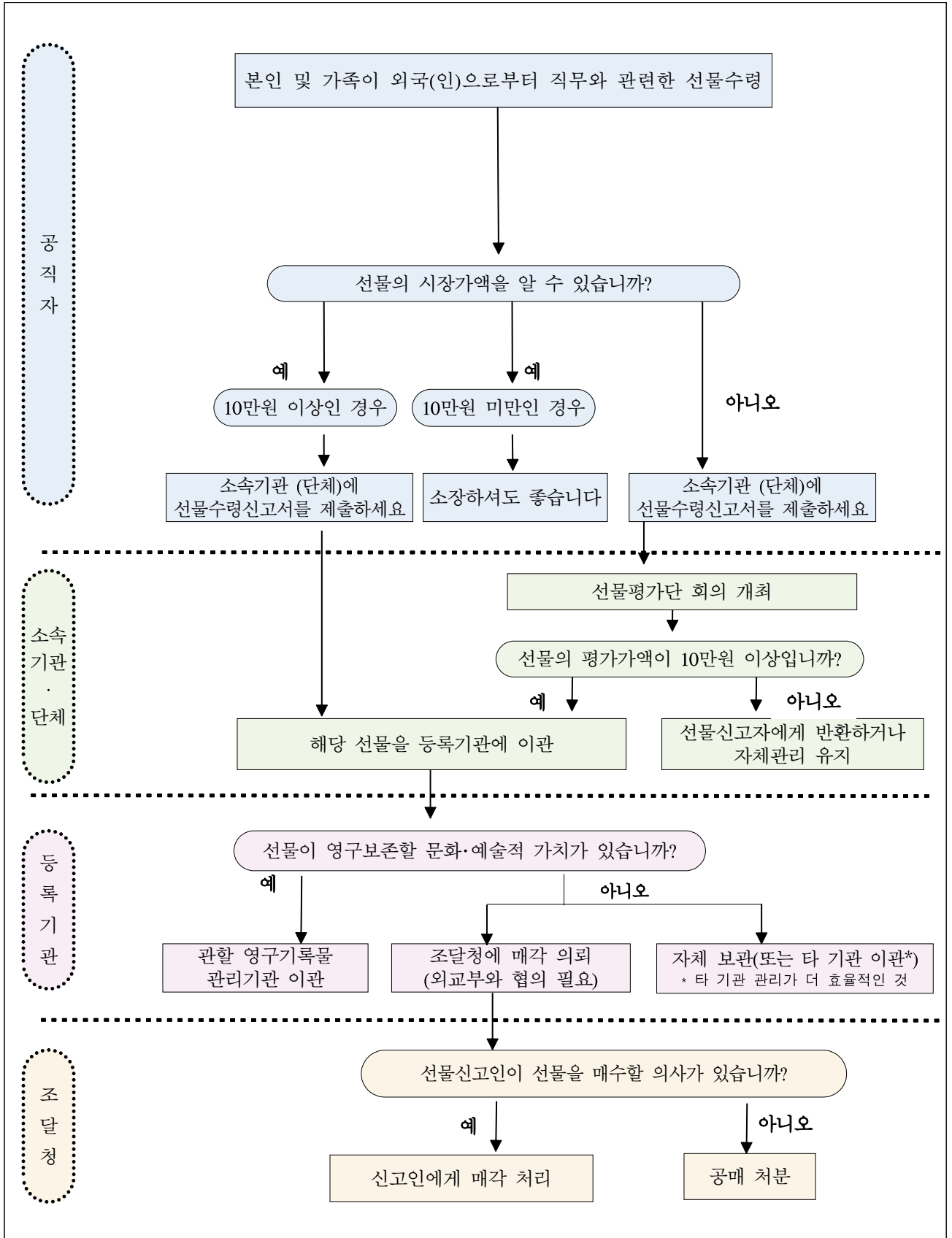
- 선물신고를 받은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등록기관*의 장에게 선물을 이관**하며, 분기별로 관리 상황을 통보합니다.

	선물신고 대상자	등록기관
	정부의 부·처·청이 감독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인사혁신처
*	시·도, 시·군·구 및 시·도 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해당 시·도, 시·군·구 및 시·도 교육청

** 선물가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신고자 반환 또는 자체관리).

☞ 등록기관은 보존가치 등을 판단하여 이관, 매각의뢰, 타 기관 관리·유지 등으로 처리

< 참고 2 : 선물신고 및 관리 절차 >



5 취업제한

공직자가 재직 중에는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차단하고, 재취업한 후에는 퇴직 전에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1. 취업제한이란? (법 제17조 및 제18조)

-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에 수행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18쪽}에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 이 때 밀접한 관련성이란 대상자가 취업 직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18쪽}는 소속기관 전체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 퇴직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 소속기관의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 내 업무는 모두 포함됩니다.
- 다만, ①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원칙), ②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예외)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2. 취업심사대상자 및 대상기관

■ 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 및 영 제31조)

- 공직유관단체의 임원과 특정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해당됩니다.

임원급	①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 ②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위원 ③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⑤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상근)
임원 등	<국방>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단,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 수석급 이상 직원)
2급 이상	<금융>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원전> 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직원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공사(원전분야), 한국전력KPS(원전분야) <철도>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동산> 한국토지주택공사
4급 이상	<금융> 금융감독원

더 알아보기 : 취업심사대상자는 재산등록대상자와 동일한지?

- ▶ 종전에는 재산등록대상자와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가 동일했으나, '20.6.4. 부터는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어, 각각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예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재산등록대상자는 전 직원이지만, 취업심사대상자는 2급이상 직원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32조)

-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및 특정 공직유관단체*의 1급(상당) 이상 직원이 해당됩니다.

*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21.10.2.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

■ 취업심사대상기관 (법 제17조 및 영 제33조)

구 분	기 준
영리사기업체	① 자본금 10억원 &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② 자본금 1억원 & 연간 외형거래액 1,000억원 이상
협회	영리사기업체가 가입한 법인·단체
법무·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세무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시장형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공직유관단체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수행
사립대학, 초·중등 사립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동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명예교수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 제외
종합병원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외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
특정분야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제57조의2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체(최근 3년 이내 중개수수료 신고한 업체), 식품·의약품 등 관련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등의 업무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 취업심사대상기관 여부 확인방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 취업제한·행위제한 > 취업제한 > 취업심사대상기관 > 검색란에 "기관명"으로 조회

3. 취업심사 절차 및 결과 (법 제18조)

■ (원칙) 취업제한여부 확인

-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 심사 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취업이 가능합니다.

밀접한 업무관련성이란?

* 행위제한제도의 '일정업무'²¹쪽과 동일

- ▶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 예 : 재정보조 등의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기준·평가항목 등 결정, 신청서 접수·심사 등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예 : 신청서 접수, 인·허가 등 조건 충족여부 검토·확인, 사후관리·감독 등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예 : 검사·감사계획 등 수립, 검사·감사반 편성 및 참여, 결과처분 검토 및 통보 등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예 : 조세의 조사계획 등 수립, 대상업체 선정, 조사인력편성, 조사, 조사결과 정리 등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 예 : 기본(사업)계획 수립, 규격 등 검토, 제안서 검토·평가, 입찰 및 계약체결, 계약에 따른 사업관리, 대금지급, 후속조치 등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 예 : 검사·감독 등 계획 수립, 검사반 등 편성 및 참여, 심리·처분 검토 등
 7.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 예 : 취업심사대상기관과 그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의 수사, 조세·특허, 공정거래 등에 관련된 사건의 심리·심판·심결 등과 관계되는 업무
 8.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 예 : 정책 등의 수립·조정·시행, 평가·감사·후속조치, 제도개선 반영 등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예외) 취업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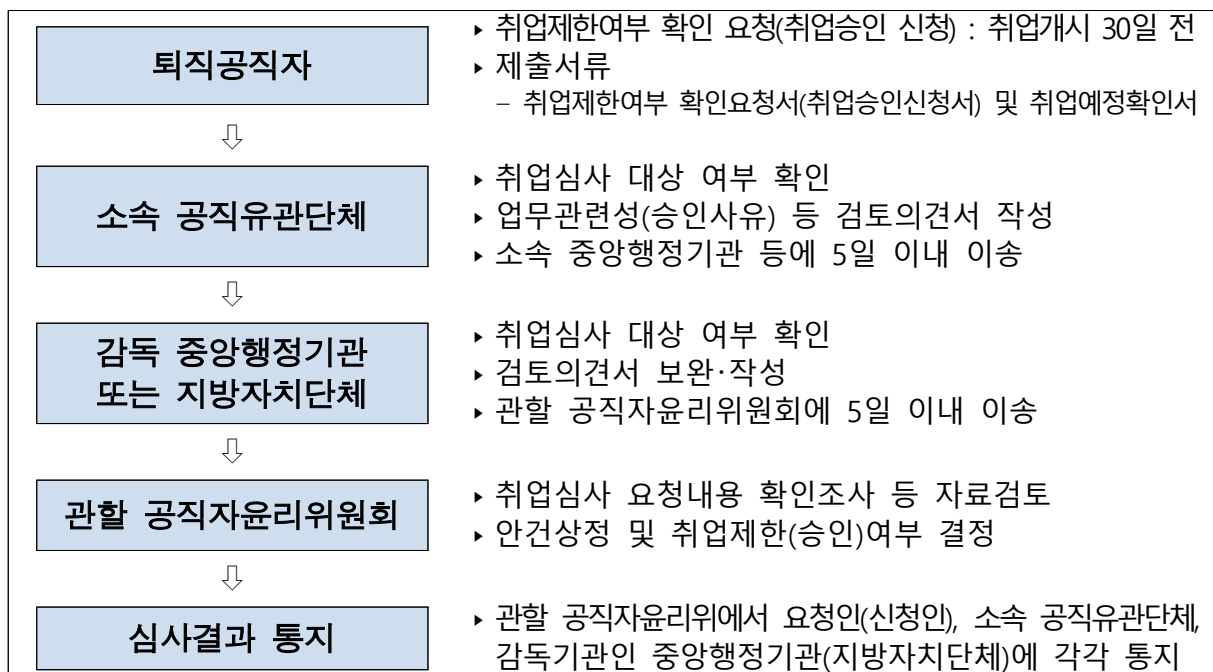
- 밀접한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취업승인” 신청이 가능하며,
- 심사 결과 특별한 사유가 있어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이 가능합니다.

취업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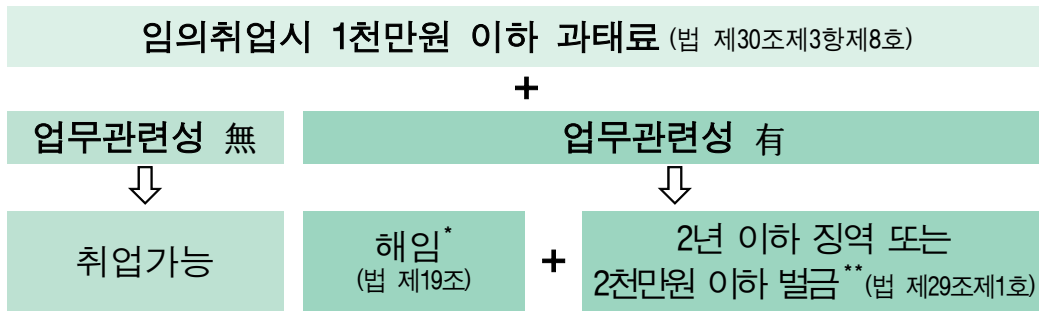
* 영 제34조제3항

1. 국가안보,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공공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자체 출자(재출자) 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술 분야 자격증소지자로서 해당 산업분야 발전 등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 종사했던 분야로 재취업하는 경우
7. 본인 처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8. 퇴직 전 처리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9.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참고 3 :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절차 >



■ 위반시 제재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이 임의취업자에 대한 해임요구에 불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30조제3항제10호)

** 고발여부 결정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발여부 결정(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영 제19조제2항제4호))

4. 취업 이후 이행해야 하는 절차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대상)

■ 업무내역서 제출 (법 제18조의3 및 영 제35조의3)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18쪽}는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18쪽}에서의 월별 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시기 : 퇴직일부터 ①1년 경과 후 1개월 이내, ②2년 경과 후 1개월 이내

※ 제출내용 :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그 외 취급한 모든 업무내역(취업심사대상기관 장의 확인을 거쳐야 함)

※ 제출절차 : 대상자가 업무내역서를 前 소속 유관단체에 제출 → 유관단체가 감독기관으로 이송 → 감독기관이 관할 윤리위로 이송 → 윤리위 심사

※ 위반시 제재 :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30조제3항제9호)

■ 취업사실 신고 (법 제19조의4)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기관장에게 취업사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시 제재 : 미신고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30조제3항제11호)

■ 취업이력 공시 (법 제19조의4)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이력(성명, 퇴직일, 취업명 및 직위 등 포함)을 매년 조사(12월 31일 기준)하여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해야 합니다.

6

행위제한

전관예우 특혜 등 공직자와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 불공정하거나 부패 소지가 있는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의 행위제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퇴직후] 업무취급 제한 (법 제18조의2)

■ 본인 처리업무 취급 금지

- 퇴직한 모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재직 중에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19쪽}를 퇴직한 후에 취급할 수 없습니다.

더 알아보기

- ▶ **직접 처리한 업무** : 직제·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
- ▶ **처리** : 직제·정관·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공문서에 결재를 하거나,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서명한 경우, 회의·업무보고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을 의미

- 다만, 국가안보·공익 목적 등 해당 업무취급이 필요하고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관할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 위반시 제재 : 취업자에 대한 해임요구(법 제19조제1항제2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29조제2호)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업무취급 금지

-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기관업무기준 취업 심사대상자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들은 퇴직 전 2년 동안 근무한 기관에서 취업한 취업심사 대상기관^{18쪽}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 업무^{19쪽}를 퇴직 후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국가안보·공익 목적 등 해당 업무취급이 필요하고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관할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 위반시 제재 : 취업자에 대한 해임요구, 5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30조제1항)

2. [퇴직후]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법 제18조의4)

- 퇴직한 모든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게 하는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시 제재 : 취업자에 대한 해임요구(법 제19조제1항제2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29조제3호)

더 알아보기 :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행위란?

- ▶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 지휘·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 ▶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 위의 1~4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3. [재직중] 취업청탁 및 알선 제한 (법 제18조의5)

■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청탁 금지

-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17쪽}는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일정 업무^{19쪽}와 관련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18쪽}에 본인의 취업을 청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시 제재 : 해임 또는 징계(법 제22조제18호)

■ 공직유관단체의 장의 취업알선 금지

-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소속 취업심사대상자^{17쪽}에 대하여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일정 업무^{19쪽}와 관련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18쪽}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시 제재 : 시정권고(법 제23조)

7 [참고] 타 법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

공직자윤리법령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 등 타 부처 소관 법령에 따라 공직 유관단체에 부과되는 의무에 대한 안내입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에 해당되며, 법률 전체 적용

대상	법조항	지정 효과
기관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청탁을 용인하지 않는 문화 조성 위반행위 신고 등을 한 직원을 보호할 의무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법한 직무수행 발견시 해당 직무 중지나 취소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법한 직무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환수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 지정
	제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
임직원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청탁의 금지 - 인가·허가 등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금지 - 공직자의 인사에 관한 청탁 금지 등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청탁을 받은 자는 직무수행 금지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이를 거절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이의 신고 의무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 수수 금지 직무 관련, 대가성 여부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나 통상적 관례 등의 경우 예외 인정 -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 소속 직원에 대한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 원활한 직무수행·사고·이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 - 직원 상조회 등에서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배우자의 금품수수 금지 의무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경우 등의 신고 및 처리 의무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강의 등을 할 때 미리 신고하며 외부강의 시 시행령에서 정한 사례금을 초과 수수 금지 등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공직자”에 해당

대상	법조항	지정 효과
기관	제3조	○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
	제8조	○ 공직자 행동강령을 내부 규정으로 제정
	제81조의2	○ 부패방지 교육 실시 의무
임직원	제7조	○ 청렴의 의무
	제56조	○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 의무
	제82조	○ 비위면직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전 5년간 소속한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
	제89조	○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공직자”에 해당

대상	법조항	지정 효과
기관	제3조	○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한 근무 여건 조성 ○ 위반행위 신고 등을 한 직원을 보호할 의무
	제7조	○ 제5·6조에 따른 신고·신청을 받은 경우 직무 중지 등 조치
	제11조	○ 소속 고위공직자·채용담당자 등의 가족 채용 금지
	제12조	○ 소속 고위공직자·계약담당자(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 등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임직원	제4조	○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 수행
	제5조	○ 인·허가, 감사, 계약 등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 신고하고 회피·기피 신청
	제6조	○ 부동산 직접 취급 기관의 경우 공직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업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에 신고
	제9조	○ 직무 관련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금전·대여·토지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14일 이내 신고
	제10조	○ 직무 관련자에게 자문·정보 전달 등을 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금지
	제13조	○ 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 등의 사적인 사용 금지
	제14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미공개정보로 사익 취득 금지
	제15조	○ 직무 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2년 이내 퇴직자와 사적 접촉시 신고

□ 그 외 공직유관단체에 부과되는 의무

법률	주요 내용
양성평등기본법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체 예방지침 마련,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성폭력방지법	○ 성폭력 예방교육, 자체 예방지침 마련,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성매매피해자보호법	○ 성매매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법	○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시 위원회의 조사대상 등
공공재정환수법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의 예방과 확산 방지의무 등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병역공개법	○ 본인과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등

※ 이 외에도 추가적인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맺 음 말

조선 11대 왕 중종은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창의적인 발상을 했습니다. 궁궐에 들어올 때 3개의 문을 만들고, 그 문에는 각각 청문(淸門), 예문(例門), 탁문(濁門)으로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 되돌아보고 알맞은 문으로 통과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청문은 맑고 깨끗한 사람이 입장하는 문으로, 신하들은 함부로 입장하기를 꺼렸습니다. 탁문 역시 부정부패한 공직자로 보일까봐 입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문은 보통 문이기에, 대다수의 신하들은 무난한 예문으로 통과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예문으로만 다니자 중종은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그러다 청렴한 공직자로 유명한 조사수(1502~1558년)가 청문으로 자신있게 통과했는데, 평소 그의 고결한 행실을 아는 이들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중종 역시 만족하고 그를 중용했다고 합니다. 조사수는 이조·호조·형조·공조 판서 자리를 두루 역임했으며, 후에 지중추부사·좌참찬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으로 통과하시겠습니까?

공직자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국민이 공직자에게 기대하는 의무를 다하고 당당하게 청문으로 다닐 수 있는 공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